

VIP REPORT



■ 한국 녹색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 OECD 국가의 녹색세제 비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주원,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한국 녹색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 OECD 국가의 녹색세제 비교

Executive Summary i

1. 문제 제기 1

2. 녹색세제의 개념 및 유형 2

3. 한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6

4. 정책적 시사점 14

■ **HRI** 경제 지표 21

1. 문제 제기

현재 세계 각국은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정책우선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세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 등 녹색세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에너지별 과세비중은 휘발유 45%, 경유 34%, 등유 21.4%, 중유 17.1%, LPG 프로판 11.4%, 부탄 32.9%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송용 에너지 휘발유, 경유의 과세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녹색세제 도입으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가 도입될 경우에 에너지별 과세 비중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환경세 등 녹색세제 도입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녹색세제의 개념 및 유형

(개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관련 세제를 '녹색세제'라고 한다. 따라서 녹색세는 '자동차·에너지제품, 쓰레기, 배출가스, 천연자원 등과 같은 환경관련 세원에 강제적이고 대가성 없이 부과되는 것이다. 녹색세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세원에는 조세를 경감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유형) 녹색세는 크게 3개의 부류로 나누어 에너지세, 온실가스세(탄소, 유황, 기타 온실가스) 그리고 폐기물세로 볼 수 있다. 에너지세는 에너지함량을, 온실가스세는 탄소, 유황 등의 함량을 그리고 폐기물세는 폐기물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목표) 따라서 녹색세 도입은 오염물질의 저감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원확보 및 재원조달 그리고 소득재분배, 에너지 소비용도별 세제 차등, 특정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감면, 환급 등의 재정지원을 2차 목표로 하고 있다.

3. 한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 한국의 녹색세제인 환경관련 국세는 수송연료(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에 추가하는 교육세, 등유, LNG, LP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그리고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있다. 그리고 환경관련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자동

차세에 추가하고 있는 교육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면허세, 주행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녹색세제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탄소 및 온실가스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제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의 녹색세제 현황 >

세 목	
국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송 연료), 교육세(교통세에 추가), 개별소비세(등유, LNG, LPG), 개별소비세(승용차)
지방세	- 자동차세, 교육세(자동차세에 추가), 취득세(자동차), 등록세(자동차), 면허세, 주행세, 지역개발세

(OECD)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녹색성장 구현을 목표로 1990년대부터 기존의 에너지세 이외에 탄소세, 폐기물세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90), 스웨덴('91), 덴마크('92)의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OECD 국가에 녹색세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탄소세 및 폐기물세를 모두 도입한 OECD 환경선진국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6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세 및 탄소세를 휘발유, 등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다.

< OECD 주요국의 녹색 세수의 규모 및 비중, 2006 >

(단위: 달러, %)

국가	녹색세수 비중			녹색세 유형			예외조항
	1인당환경세수(달러)	녹색세수 / 총세수(%)	녹색세/ GDP(%)	에너지	온실가스	폐기물	
핀란드	1,188.5	6.87	2.99	○	○	○	전력생산(가정용)
스웨덴	1,176.8	5.54	2.72	○	○	○	발전용 연료
노르웨이	1,972.2	6.21	2.73	○	○	○	금속업
덴마크	2,412.2	9.66	4.79	○	○	○	발전용 연료
네덜란드	1,606.9	9.97	3.88	○	○	○	온실원예업
스페인	523.1	5.11	1.87	○	○	○	×
미국	375.5	3.05	0.86	○	○	○	수출용
일본	586.1	6.09	1.72	○	○	×	×
한국	508.9	10.34	2.76	○	×	×	×
평균	가중	534.3	5.38	2.36	* OECD 30개국의 평균치이며 가중평균은 각 국가의 GDP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		
	산술	847.7	6.63	1.71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2009, 6.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제 도입의 특징은 **첫째**, OECD 환경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의 경우, 최저세율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원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리터당 평균 70.11원으로 추정되나, 환경선진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단위당 탄소세의 최저세율은 평균은 244원(0.1365유로, 원/유로환율 1,792원, 8월 28일 기준)이다. 환경선진국들은 환경오염 물질배출 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세수를 환경보전 이외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율 >

	에너지세		온실가스세		폐기물세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평균 (유로)	0.0894	54.3031	0.1365	87.3000	1.9670	42.4773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둘째, 이들 OECD 국가들은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즉, 환경관련 세수를 활용하여 기존의 에너지세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노동자의 개인소득세를 감축하여 새로운 세제 도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용, 수송용 등 용도별로 환경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나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하고 있다. 환경세 도입 정책을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도입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이 스스로 일정수준의 오염물질을 경감할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조세 면제 또는 세율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 또는 배출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약정을 체결하여 80%의 조세 경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 vs. OECD) 한국의 녹색세제는 에너지소비 분야에 국한하여 도입하고 있으나, 세금 수입의 비중은 OECD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총 세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녹색세제의 세금수입 비중은 10.34%, OECD평균 5.38%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세제 세금수입의 GDP비중은 2.76%를 기록하여 OECD 평균 2.3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탄소세 및 매립세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OECD 환경선진국과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세

제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을 비교할 때, 한국의 녹색세수/GDP비중은 2.76%로 스웨덴, 노르웨이의 녹색세수/GDP비중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은 덴마크와 네덜란드보다 높은 녹색세수/전체세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녹색세제의 세수 비중은 이미 OECD 환경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새로운 환경세가 도입되어 녹색세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세제와 중복되어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환경관련 세금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 폐기물세 등 새로운 녹색세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세율의 조정 등 정책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효율적 녹색세제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녹색세제는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의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세의 1차 목표인 오염물질 저감, 그리고 2차 목표인 소득재분배 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녹색세율을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보다 높게 적용하여 녹색세수는 환경보호 및 고용·투자 활성화 등 전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하여 활용해야 한다.

둘째, 조세 왜곡 방지를 위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녹색세제를 도입하면서 가중되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세금부담이 높은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관련 조세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의 왜곡이 나타나는 분야의 세율을 낮추어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셋째, 산업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업종간 차별적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 주력 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요소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 수출 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은 일정기간 세제 혜택 및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발적인 협약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형 사업,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제품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너지절감 등의 자발적 협약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발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녹색세제 도입에 따른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소득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필수재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역진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금부과 제외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문제 제기

- 경제의 성장 및 발전은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녹색성장(**green growth**)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녹색세제를 강화
 - 경제성장과 환경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지속되고 있음
 - 배출가스 등 국제 환경 협약에 따라 지속가능한 저탄소·에너지절감을 위한 성장모형을 모색
 - OECD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탄소세 도입 등 저탄소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
-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대상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OECD 국가들과 같이 탄소세 등 환경세제의 도입 준비가 필요**
 - 한국은 제 1차('08~'12년)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됨
 -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6위이며, 증가율은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 참여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에너지 과세비중을 고려할 때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계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과세비중은 휘발유 45%, 경유 34%, 부탄가스 32.9%, 등유 21.4% 등으로 수송부문의 과세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¹⁾
 - 따라서 새로운 환경세가 도입되면 유종별 세계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환경세 도입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휘발유 평균가격을 1,700원으로 추정, 교통에너지환경세(529원), 교육세(70원) 등 세금의 총합계는 766원, 경유 평균가격은 1600원으로 추정, 교통환경에너지세(375원), 교육세(50원) 등 세금의 총합계는 543원,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13페이지 '유종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표' 참고할 것.

2. 녹색세제의 개념 및 유형

○ 녹색세제의 개념 및 필요성

- (개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관련 세제를 녹색세제라고 함
 - 따라서 녹색세제란 '자동차, 에너지제품, 쓰레기, 배출가스, 천연자원 등과 같은 환경관련 세원에 강제적이고 대가성 없이 부과하는 조세
- (필요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재화·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고, 친환경적인 세원에는 조세를 경감하여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
- (목표) 외부성의 내부화, 세원확보를 통한 재원조달, 그리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배분 및 예산지원 등에 있음
 - CO₂, 대기·수질·폐기물 등 오염배출 저감을 유도하여 부정적 외부성을 교정
 - 환경관련 세금 수입은 각종 공공 지출, 투자지원 및 보조금 지출을 위한 재원 조달
- (과제) 따라서 녹색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 세제의 과세대상·세율의 조정 및 세수 활용 등의 전반적인 세제의 개편이 요구됨
 - 세입측면에서 세율수준 및 세부담을 적정 배분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율 설정
 - 에너지원간 세율조정, 정부의 일반 세입/세출 구조조정
 - 산업 경쟁력 지원 및 소득재분배, 에너지 소비용도별 세제 차등, 특정산업 및 저소득층 지원 (감면·면제·환급·재정지출)
 - 세입측면의 세율수준 및 세부담의 적정배분을 통한 외부효과 내부화, 비효율성 제거,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세출측면의 적정한 예산 지원으로 환경R&D·신재생에너지·친환경자동차·신성장동력 확충·환경산업 육성

○ 녹색세제의 도입 배경

- 경제성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논의
-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 또는 강화는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물론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적 방향으로의 이행을 유도
- 고용·투자 등 일반 경제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 원으로서 녹색성장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인식
 - 환경보호 목표와 고용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 일반 경제정책적 목표의 조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²⁾
 - 내생적 성장모형은 인적자본, R&D, 지식 및 기술 등의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진행됨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환경 요인 또한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적정 환경세 수준은 오염배출 단위당 사회적 한계피해비용(**Marginal Social Damage**)의 부(-)의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수준 이상이 필요
 - 신규 환경세제 도입은 환경세수 환류를 통하여 조세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존재
 -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2) 과거 신고전파(neoclassical) 성장모형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서로 충돌한다”는 전통적 인식은 1990년대 들어 새로이 등장한 내생적(endogenous) 성장모형에 의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점차 바뀌고 있음. 내생적 성장모형은 경제성장이 단순히 인구나 기술수준의 외생적(exogenous) 증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인적자본, R&D, 지식 및 기술 등의 내생적 축적과정에 포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이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추세임.

○ OECD 국가들의 녹색세제 유형

- OECD 국가들의 녹색세제는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에 따라 크게 3개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에너지세: 화석연료의 에너지 함량에 따라 수송용·산업 및 가정 등의 소비에 대한 과세로 자동차 관련 세금을 포함하고 있음
 - 온실가스세: 광물연료, 등유, 중유, 경유, LPG 등 화석연료 또는 에어컨 등의 사용의 결과 발생하는 가스 배출 기준에 따라 세금 부과
 - 따라서 온실가스세는 탄소세(CO₂), 질소산화물세(NO₂), 황산화물세(SO₂), CFC 등의 배출량에 따라 세금 부과
 - 폐기물세: 폐기물세, 매립세, 비료세, 살충제세 등 제품의 소비에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환경 유해성에 따라 부과

-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와 온실가스세의 과세기준은 에너지 함량 또는 가스배출량에 있음
 - 에너지세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소비·등록, 전력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에너지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
 - 본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세를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CO₂, NO₂, SO₂, CFC 등 배출량 또는 에어컨 등의 제품 사용의 결과 발생하는 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구분
 - 따라서 온실가스세는 탄소세, 황산화물세, 질소산화물세, 프레온가스 등의 가스배출세로 세분할 수 있음

- 유럽 국가들은 대기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주변국과 아황산가스(SO₂)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협약을 체결
 - 주변국가들 간의 협약체결에 따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로써 유황세를 도입

○ 녹색세의 효과

- 녹색세는 피구(Pigou, 1947)의 환경세에 의하여 이론적 분석이 시작됨
 - 환경세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
 -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에서 오염배출 단위당 사회적 한계 비용(부의 외부성)을 내부화를 목적으로 환경세를 부과
 - 따라서 환경세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교정의 수단으로 활용

- 이중배당가설에 따르면 환경세는 외부성의 내부화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에 따르면 오염저감효과 및 환경세수에 따른 기존 세제 완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
 - 노동, 소득세 등 기존의 조세부과에는 조세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 환경세제의 도입은 1차적으로 오염저감 효과를 갖게 되며, 2차적으로 환경관련 세수입을 통해 기존에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세제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중배당의 효과가 있음
 - 예를 들면 환경세 도입으로 조세왜곡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던 노동, 소득세 등 기존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차선의 경제에서 적정 환경세 수준은 피구비안 수준 이상이 필요함을 인식
 - 피구비안은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중배당효과가 있을 때에는 세금부과 수준을 높일 수 있음
 - 적정 환경세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optimal 수준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임

3. 한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 한국의 녹색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음
-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가하면서, 2007년 1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됨
 - 교통관련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통세는 94년~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과세시한을 3년씩 연장을 하였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 확보 및 교통시설 투자의 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여, 교통인프라의 확충에 활용
 - 현행 에너지 중심의 세수가 목적세(교통특별회계, 환경특별회계 등)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0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운영 계획임

< 우리나라 녹색세제 현황 >

세 목		용도 및 회계
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송 연료)	교통시설 확충
	교육세 (교통세에 추가)	교육재정 충당
	개별소비세 (등유, LNG, LPG)	일반회계 편입
	개별소비세 (승용차)	일반회계 편입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재정 충당 (지방재정 일반회계)
	교육세 (자동차세에 추가)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	
	면허세	
	주행세	
	지역개발세	지역 균형발전, 수질개선

자료: OECD대표부,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세수 중립적 '녹색 세제' 구축 시급, 2009.04.17, 재인용

○ OECD 국가들의 녹색세제 도입 현황

- OECD 주요국의 녹색세제는 199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

- 핀란드는 1990년 탄소세를 세계 최초로 휘발유, 등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에 부과
- 스웨덴은 1991년 휘발유, 등유, 경유, LPG, 천연가스, 발전용을 제외한 석탄에 탄소세를 부과
- 덴마크는 1992년 가정 및 공공부문에, 1993년 사업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화석연료에 부과

- OECD 환경선진국은 에너지세, 탄소세, 폐기물세를 모두 도입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은 에너지세 · 탄소세 · 폐기물세를 모두 도입하여 환경세를 강화함
- 에너지세 → 탄소세 → 폐기물세의 순으로 환경관련 세제를 순차적으로 도입

< OECD 국가의 녹색세제 도입 현황 >

국가	에너지세	온실가스세				폐기물세
		탄소세	유황세	질소산화물세	CFC 등	
핀란드	○	○				○
스웨덴	○	○	○			○
노르웨이	○	○	○	○	○	○
덴마크	○	○	○		○	○
스페인	○	○				○
폴란드	○	○				○
이탈리아	○		○	○		○
스위스	○	○	○			
네덜란드	○					○
영국	○					○
미국	○				○	○
일본	○		○			
오스트리아	○					○
오스트레일리아	○				○	○
캐나다	○	○				
뉴질랜드	○					

한국 녹색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터키	○					
아이슬란드	○					○
멕시코	○					
그리스	○					
아일랜드	○					○
체코	○	○	○	○		
프랑스	○	○				
헝가리	○					○
룩셈부르크	○					
포르투갈	○					
벨기에	○					○
독일	○	○				
슬로바키아	○					○
한국	○					
환경 선진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자료: OECD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주: 환경선진국은 에너지세, 탄소세, 폐기물세를 모두 도입한 국가로 선정.

- 한국의 원유정제품에 환경관련세제, 주행세 등의 세금이 부과
 - 휘발유 및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부과
 - 등유 및 중유에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
 - LPG에는 개별소비세, LNG는 특소세를 부과

< 한국의 원유정제품 및 가스 대상 세제 현황 >

국가	부과 대상	부과 세목명	세금 합계
원유 정제품	휘발유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766원
	경유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543원
	등유	개별소비세, 교육세	103원
	중유	개별소비세, 교육세	113원
LNG		특소세	140원
LPG	프로판	개별소비세	186원
	부탄	개별소비세	301원

자료: 기획재정부.

주: 보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조.

○ OECD 환경선진국 녹색세제의 특징

- OECD 환경선진국의 피구비안 이상의 세율을 적용, 환경보전 이외의 목적에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

- 환경선진국의 탄소세율은 피구비안 이상으로 적용
- 화석연료의 단위당 부과되는 탄소세 등 온실가스의 최저세율은 244원(0.1365 유로)³⁾, 에너지원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평균 70.11원⁴⁾
- 따라서 환경선진국에서는 녹색세수를 환경보전 이외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율 >

(단위: 유로)

	에너지세		온실가스세		폐기물세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핀란드	0.03	0.57	0.05	2.02	0.5	1
스웨덴	0.14	305.64	0.14	3.11	0.19	45.1
노르웨이	0.0005	1.521	0.351	290.41	0.0021	70.6036
덴마크	0.24	0.56	0.01	53.66	1.48	50.3
폴란드	0.0658	17.0276	0.0681		2.63	52.86
스페인	0.06	0.5	0.2		7	35
평균	0.0894	54.3031	0.1365	87.3000	1.9670	42.4773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주1: 여기에서 온실가스세는 탄소세, 유황세, 질소산화물세, 프레온가스세의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로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에 수록

주2: 스웨덴의 에너지세 중에서 비축 목적의 LPG에는 톤당 305.64유로의 세금을 부과.

3) 2009년 8월 28일 기준, 원/유로환율은 1,792원.

4) 김승래, 박상원, 김형준은 에너지원별 리터당 탄소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67원, 경유 82원, 등유, 78원, B_C유 95원 등으로 추정, 에너지원 단위당 평균 사회적 비용은 70.11원/리터, 조세연구원,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 2008.12. p.106.

- 세수 환류를 통한 세수 중립적 개편(revenue-neutral reform) 추진
 - 환경세의 1차 목적인 오염물질 제거 등 환경개선 투자 등에 활용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탄소세 및 영국의 폐기물 매립세 도입에 따른 세금 수입은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노동자의 개인소득세 감축에 사용

- 탄소세 도입 이후 기존 에너지세에 대한 세율 인하
 - 1990년대 초부터 북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에너지에 대한 과세 이외에도 탄소세를 새로이 도입·시행
 - 탄소세 도입과 동시에 기존 에너지세 세율을 인하 또는 적용대상을 축소·폐지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

<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수 운용 현황 >

국 가	시작연도	과세대상	감소세목
스웨덴	1990	CO ₂	개인소득세
		SO ₂	농업에 대한 에너지세
덴마크	1994	에너지, 수질, 폐기물	개인소득세
		CO ₂	사회보장기여금
		SO ₂	자본소득세
네덜란드	1996	CO ₂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노르웨이	1996	CO ₂ , SO ₂ , 디젤유	개인소득세
영 국	1996	폐기물 매립	사회보장기여금
이탈리아	1999	석유제품	사회보장기여금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세수중립적' 녹색 세제' 구축 시급, 2009.04.17, 재인용.

- 국가별 상황과 경쟁력 등을 감안한 광범위한 예외 인정
 - OECD 국가들의 환경관련 조세의 구조는 국가별 상황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입되고 있음

-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산업별, 부문별로 일반소비세 외에 에너지세, 탄소세를 선택적으로 세율의 차등 부과 및 면제 및 경감 등 예외조치 도입
- 한편 프랑스는 온실가스 경감정책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

<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제 관련 예외조항 >

국 가	면 제	경 감
핀란드	- 발전용 연료 - 항공용 알코올 - 비행용 등유, 보트용 LPG	- 천연가스(50%) - 광업·제조업·온실원예업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50%)
스웨덴	- 발전용 연료 - 금속업 가공용 석탄·코크스 - 원료용 연료(광물유, 석탄, 석유, 코크스)	- 제조업 및 원예업(50%) - 선박용·철도수송용 연료 - 시멘트·갈탄·글래스 등의 생산용 연료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노르웨이	- 국제항공·원양어업·연해어업·국제해운업용 연료 - 시멘트·프로세스산업용 석탄·코크스 - 국내용 천연가스, 환원용·원료용 석탄	- 종이·펄프산업 - 어육가공업 - 국제해운업(50%)
덴마크	- 발전용 연료 - 전력·가스 생산용 석탄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50%)
네덜란드	- 석유계 잔류물 - 온실원예업 및 발전용 천연가스 - 지역열공급	- 천연가스 대량소비자 - 천연가스·전력의 과세상한선 설정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영국	- 알루미늄정련용 전력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 대중교통수단용 에너지 - 탄화수소유 및 도로교통용 가스연료 -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연료	- 원예업(50%) - 정부와 자주협정 체결 10업종 (철강 세라믹, 알루미늄, 주조, 비철 금속, 식품음료, 화학, 유리, 제지) 기업(80%)
오스트리아	- 자체 소비용 전력생산(5천KW이하/연간) - 가정용 전력 생산 - 난방용을 제외한 석탄 소비	- 해당사항 없음
스페인	- 해당사항 없음	- 환경보호 관련 투자액(10%)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 녹색세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정책 조합
 - 에너지 부문을 산업·발전부문과 수송·가정·상업 부문으로 양분하여 차별적인 정책 조합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산업 및 발전부문의 경우 탄소세 도입 등 조세체계 개편과 함께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등 비세제 요소를 병행하고 있는 추세
 - 스페인은 온실가스거래제도 도입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거래를 허용

- 녹색세를 자발적 수단 또는 협약제도와 함께 시행
 - 녹색세 도입과 함께 자발적으로 일정 수준의 오염배출을 경감시킬 경우에는 조세를 면제하거나 타 분야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 덴마크는 1996년 유향세 도입과 탄소세 및 에너지 절약 협약(Energy Efficiency Agreement)을 함께 시행
 - 영국은 2001년 기후변화세 도입시 기후변화약정(Climate Change Agreements)을 체결하여 에너지집약 산업에 80%의 조세 경감혜택을 부여
 - 이탈리아는 관련 정보제공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관련 교육을 자발적 수단으로 활용

- (한국 vs. OECD) 한국의 에너지 소비관련 세금수입 비중은 OECD 녹색세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에너지세, 탄소세, 매립세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환경선진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녹색 세수가 높은 수준
 - 환경선진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비중을 기록
 - 특히 덴마크, 네덜란드의 환경관련 세수의 GDP비중은 각각 3.88%, 4.79%
 - 또한 녹색세금수입의 총세수 비중은 덴마크 9.66%, 네덜란드 9.97%
 - 탄소세, 매립세 등을 모두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세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

< OECD 주요국의 녹색세수의 규모 및 비중, 2006 >

(단위: 달러, %)

국가	녹색세수 비중			녹색세 유형			예외조항
	1인당 녹색세수	녹색세수/ 총세수 (%)	녹색세/ GDP(%)	에너지 세	온실 가스세	폐기물 세	
핀란드	1,188.5	6.87	2.99	○	○	○	기정용전력생산
스웨덴	1,176.8	5.54	2.72	○	○	○	발전용 연료
노르웨이	1,972.2	6.21	2.73	○	○	○	금속업
덴마크	2,412.2	9.66	4.79	○	○	○	발전용 연료
네덜란드	1,606.9	9.97	3.88	○	○	○	온실원예업
영국	375.5	3.05	0.86	○	○	○	대중교통연료
미국	375.5	3.05	0.86	○	○	○	수출용
스페인	523.1	5.11	1.87	○	○	○	×
오스트리아	964.4	5.92	2.47	○	○	○	대중교통 연료
폴란드	523	5.48	1.84	○	○	○	×
벨기에	768.3	4.58	2.03	○	×	○	건전지(회수분)
독일	848.3	6.74	2.40	○	○	×	×
프랑스	756.6	4.64	2.05	○	○	×	×
스위스	712.9	4.65	1.37	○	○	×	난방용연료
일본	586.1	6.09	1.72	○	○	×	-
평균	가중	534.3	5.38	2.36	* OECD 30개국의 평균치이며 가중평균은 각 국가의 GDP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		
	산술	847.7	6.63	1.71			
한국	508.9	10.34	2.76	○	×	×	-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주: 2006년 기준으로 에너지세를 포함하였으며, 평균값은 OECD 30개국 대상으로 계산.

- 한국의 녹색세수 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
 - 전체 세금수입의 녹색세금수입의 비중은 한국 10.34%, OECD 평균은 5.38%
 - 녹색세금수입의 GDP 비중은 한국 2.76%, OECD 평균은 2.36%를 기록
 - 스웨덴(2.72%), 노르웨이(2.73%)는 한국의 환경관련 세금수입의 GDP 비중과 유사한 수준

- 한국의 녹색세수의 총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음
 - 한국의 녹색세수의 총세수 비중은 10.34%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네덜란드 9.97%, 덴마크 9.6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보다 낮은 수준

- 한국은 탄소세, 매립세 등의 환경세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녹색 세금수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의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에너지소비 관련 세수 및 환경세율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녹색세 도입에 따른 기존의 녹색세율의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4. 정책적 시사점

- 녹색세제는 환경오염 교정 비용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되는 녹색세수는 소득재분배 등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연계 필요

- 친환경 세수 증대는 소득재분배, 소득, 연금, 고용 및 투자 촉진 등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연계
 - 사회적 비용 수준의 세율은 환경오염 교정의 역할에 활용
 - 사회적 비용 이상의 친환경 세금 수입은 고용 및 투자 촉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라는 일반 경제정책의 목표와 연계 필요

- 환경보호 소득재분배 및 투자활성화 등으로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 녹색세제 도입은 조세 왜곡 방지를 위해 세수 중립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현행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체계의 단순화 및 에너지 조세부담을 분산
 - 석유제품 판매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판매 부과금까지 5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기존의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관련 조세 부담을 분산
 -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조세부담률 설정을 통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단순화
 - 전체 조세시스템 개혁과 연계하여 기존 소득과세의 왜곡 정도와 경제의 각종 생산기술 및 소비패턴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환경세 설정
 - 환경세를 강화하면서 기존세제를 완화
 - 기존 과세의 왜곡 정도를 파악하여 소득세 등 세제의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낮춰야함
 - 또한 생산 측면에서도 세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세 설정
-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를 감안, 국가주력 산업 등 업종별 차별적 세율 적용 필요
 - 국가주력 산업 및 가정용, 생계형 사업용 등에 대해서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
 -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요소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 수출경쟁력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전략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제 혜택 등의 재정지원 필요

○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유도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형 산업, 친환경제품 및 청정기술 등 환경기술 및 관련 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
- 자발적 협약을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제품 개발 분야 등의 설비 투자 등에 성공할 경우 세제혜택 또는 지원 확대
 - 에너지절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발적 협약 등을 적용하여 세제 혜택
 - 자발적인 기술 개발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취약계층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함

- 필수재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역진적인 성향을 갖게 됨에 따라서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에너지 부문에 대한 세율 제외 대상 설정이 필요
 - 소득 분배의 역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 최하위 구간에 대한 환경세 인하 등이 필요
- 에너지 **Voucher**제도(서비스 이용권), 생계형 사업자 유가보조금, 기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강화를 통하여 세입측면의 형평성 저하를 보완할 수 있음 **HRI**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02-3669-4120)

<참고자료> 한국의 유종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표 (09.5월 기준)

(단위 : 원/리터, 프로판·LNG 원/kg)

과세 품목	총세액	본세				부가세(Sur-Tax)			
		세목명	세율			주행세 (세율)	금액	교육세 (세율)	금액
			실행 세율	법정 세율	탄력 세율 하한				
휘발유	766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	475	333	본세의 30%	158	본세의 15%	79
경유	543	교통에너지 환경세	375	340	238	"	112	"	56
LPG 부탄	185	개별 소비세	161	147	103			"	24
등유	104	개별 소비세	90	90	63			"	14
중유	20	개별 소비세	17	17	12			"	3
LPG 프로판	20	개별 소비세	20	20	14				
LNG	60	개별 소비세	60	60	42				

자료 :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고자료> OECD 환경선진국의 환경세 과세대상 및 세율 ('09년 8월 기준)

국가	환경세		과세 대상 (표준)	세율
핀란드	에너지		화석연료	0.03 - 0.57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화석연료	0.05 - 2.02 € / 각 연료 단위
		폐기물		선박 (vessels)
			폐기물 매립	30.00 € / 톤
스웨덴	에너지		화석연료	0.0005 - 305.64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화석연료	0.14 - 305.64 € / 각 연료 단위
		유황세		3.11 € / kg, 2.79 € / m ³
	폐기물		(비료세) 질소, 카드뮴	0.19 - 3.11 € / kg
			폐기물 매립	45.10 € / 톤
노르웨이	에너지		화석연료	0.0005 - 1.5210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화석연료	0.0351 - 0.1017 € / 각 연료 단위
		온실가스세	HFC, PFC	3.5120 - 290.41 € / kg
		유황세	화석연료	0.0090 € / L
		질소산화물세	질소산화물 배출량	1.9195 € / kg
	폐기물		음료용기	0.1211 - 0.5910 € / unit
			폐기물 최종 처리	7.5508 - 70.6036 € / 톤 0.0021 - 13.10 € / g (다이옥신 324110.46 € / g)
	기타		살충제	Complex formula
덴마크	에너지		가솔린을 제외한 화석연료, 전력	0.24 - 0.56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화석연료	0.01 - 43.33 € / 각 연료 단위
		유황세	화석연료	1.37 - 2.74 € / kg
		온실가스세	CFC, HFC, PFAC, SF6	1.34 - 53.66 € / kg
	폐기물		매립량	44.27 - 50.30 € / 톤
			폐수배출량	1.48 - 14.76 € / kg
	기타		질소비료	0.67 € / kg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소비자가의 3 - 35%
			PVC	0.01 - 0.48 € / kg
N1/Cd 배터리			0.80 € / cell	
염소 처리된 솔벤트			0.2683 € / kg	

국가	환경세		과세 대상 (표준)	세율
네덜란드	에너지		천연가스, 전기, 난방유	0.0005 - 0.16 €/각 연료 단위
	폐기물	매립세	폐기물 운송량, 매립량	14.11 - 85.54 € / 1000kg
영국	에너지 · 기후변화세		산업, 상업용 에너지	0.48 - 16.03 € / 각 연료단위
	폐기물	매립세	매립량	3.13 - 5.10 € / 톤
이탈리아	에너지		전력생산	0.0031 - 0.0047 €/KWh
	온실 가스	질소산화물세	질소산화물	104.84 € / 톤 (연간)
		황산화물세	황산화물	53.20 € / 톤 (연간)
	폐기물	매립세	매립량	0.21 - 25.82 € / 톤
폐수세		폐수배출량	0.01 € / m ³	
오스트리아	에너지		화석연료	0.05 - 66.00 € / 각 연료 단위
	폐기물		폐기물 매립, 소각	7.00 - 87.00 € / 톤
폴란드	에너지		전력생산	0.0658 - 17.0276 €/톤
	온실 가스	탄소세	전력생산	0.0681€/톤
	폐기물		매립량	2.63 - 52.86 €/톤
스페인	에너지		화석연료	0.06 - 0.50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탄소 배출량	0.20 € / 톤
	폐기물		폐기물 매립 소각	7 - 35 € / 톤 2000 - 7000 € / m ³
미국	에너지		화석연료	0.0003 - 0.1231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온실가스세	화석연료	0.0137 - 2279.41 € / 각 연료단위
	폐기물		유해성 폐기물량	0.7540 - 68.40 € / 톤
			방사능 폐기물량	160.7387 € / m ³
일본	에너지		화석연료	0.0025 - 4.6309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황산화물세	황산화물 배출량	지역에 따라 다양

한국 녹색세제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	환경세		과세 대상 (표준)	세율
호주	에너지		화석연료	0.0096 - 0.2178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온실가스세	대기가스 배출량	0.0771 - 1.7135 € / kg 77.1080 - 1713.51 € / 톤
	폐기물		폐기물량	22.0472 € / 톤
캐나다	에너지		화석연료	0.0045 - 0.1089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화석연료	0.0150 - 15.93 € / 각 연료 단위
스위스	에너지		화석연료	0.0007 - 5.5544 € / 각 연료 단위
	온실 가스	탄소세	경유	0.0189 € / L
		유황세	황산화물을 0.1%이상 포함하고 있는 난방유	7.5742 € / 톤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구 분		2008(E)					2009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상반기	하반기	전체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5	4.3	3.1	-3.4	2.2	-4.1	-0.2	-2.2	
	최종소비지출 (%)	3.9	2.6	2.0	-1.9	1.6	-2.2	-0.6	-1.4	
	민간소비 (%)	4.0	2.3	1.4	-3.7	0.9	-4.2	-1.4	-2.8	
	총고정자본형성 (%)	-0.5	0.6	1.8	-7.3	-1.7	-5.0	0.4	-2.3	
	건설투자 (%)	-1.9	-0.3	0.2	-5.6	-2.1	1.8	1.9	1.8	
	설비투자 (%)	1.5	1.1	4.3	-14.0	-2.0	-20.3	-2.6	-11.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2.1	-1.3	-85.8	75.2	-64.1	175	70	245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66	-3	-79	15	-133	156	21	177
		수출 (억 \$)	994	1,145	1,152	931	4,223	1,669	2,006	3,675
		증가율 (%)	(17.4)	(23.1)	(27.3)	(-9.9)	(13.6)	(-22.0)	(-3.6)	(-12.6)
		수입 (억 \$)	1,061	1,148	1,231	915	4,353	1,513	1,985	3,498
증가율 (%)	(28.9)	(30.5)	(43.0)	(-9.0)	(22.0)	(-31.5)	(-7.4)	(-19.6)		
기타	소비자물가 (평균, %)	4.7					2.9			
	실업률 (%)	3.2					4.0			
	국제유가(Dubai, 달러)	94.29					65 달러 내외			
원/달러 환율(원, 평균)		1,103.36					1,250			